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군



2023년 3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10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(평가) 제1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기간제 근로자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단, 전환근로자의 평가는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.”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참고사항

□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

제36조(병가 및 휴직)

-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입원 및 수술 후 완치시까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2. 전염병의 질환으로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② 제1항중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하여 보상하며 이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연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.
-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육아휴직의 경우 인사규정 제40조(휴직)를 준용한다.